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30일

나. 제출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5월 13일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 1. 9)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당 지급을 통하여 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제2조)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포함)
 - 지급금액 : 월25만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13. 7. 1 시행 예정인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지급금액 : 월30만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라.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대 회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종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월30만원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사무소 등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